

# ITU는 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

## - 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 결과 -

심사위원회는 94년 도쿄 전권위원회의 결의15에 의해 ITU관련 멤버쉽, 재정, 작업방법 및 의사결정에서  
부문회원의 권리를 강화시켜 ITU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잠정운영된 위원회이다.

이 봉 국 / TTA 국제협력국 국제협력2부장

“ITU 생산품 및 서비스의 가치와 품질은 의  
심할 나위가 없지만 이를 생산품의 고객은 다른  
곳에서도 이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심사위원회(RevCom)는 현재와 장래의 회원들  
이 ITU 활동참여에 매력을 느낄수 있도록 금전  
에 대한 가치도 제공하고 의식적 또는 실질적인  
장벽이 없이 참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심사  
위원회 의장 Wyn Lucas씨가 말했다.

1994년 10월의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수의 결의사항,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들은  
ITU 조직의 본질적인 개혁과 작업방법의 추가  
조정을 계속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ITU는 정  
부간 기구이며 앞으로도 정부간 기구로 존속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타 산업체, 과학  
및 상업기관으로 구성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유  
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속하게 발전하는 전기통신환경을 감안한 주  
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ITU의 부문활동에 참가  
하는 회원으로서 더 많은 민간단체를 가입시키  
는 것이다.

이것이 심사위원회 설립에 있어서 주 고려사  
항 가운데 하나이며 동 위원회는 1995년 5월에  
최초로 소집되었다. 이 최초의 회의에서 심사위  
원회(RevCom)는 모든 회원 및 회원국에게 기고  
를 요청하였고 이를 기고문이 자료수집 및 업무

지침용으로 제공된 것이다.

이 회의(RevCom 제2차 회의(1995. 12.11-15,  
제네바))의 개최 목적은;

첫째: 접수된 기고서를 검토하고 위원회보고  
자가 이를 요약(ITU뉴스레터 7/95참  
조)정리하는 것이며,

둘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점  
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셋째: 이사회 보고서의 형식에 합의하는 것이  
었다.

이 회의에서는 확인된 회원의 범위, 재정문제  
및 작업방법과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사항을 체  
계화했다. 이는 첫번째 회의에서 이들영역의 중  
복과 상호관계가 분명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회원자격(Membership)

회원을 두 개의 넓은 범위 즉, 체약회원 및 비  
체약회원으로 하자는 대체적인 합의가 기고서와  
논의사항에서 나왔다. 1996년 이사회에서 이 제  
안이 승인되면 ITU현장 협약 당사자(Party)인  
회원(Member)과 ITU부문(Sector)의 회원으로  
될것이며, M-회원과 m-회원으로 부적절하게 분  
류되는 것을 피할수있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존 회원 및 잠재 회원이 원

하고 필요로 하는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U로 인정했다. 그러나, 고객 즉 회원들은 현재 이들 생산물과 서비스의 다수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ITU는 회원가입, 재정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개방성과 신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 참석자는 “다른 포럼, 예컨대 ATM포럼에 참가하려면 서식에 기입하여 수표와 같이 보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준화 부문에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은 통신망사업자(network operators), 범세계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조직(user organization), 금융기관, 개발기관(development agencies), 산업체 콘소시엄 등을 들 수 있다. ITU부문의 회원이 누리는 혜택을 증대시키는 한 방법으로 ITU를 선전하고 현존 및 잠재성 고객을 겨냥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다.

연합의 다양한 활동은 또 다른 권리와 의무로 나타난다는 견해를 인정하였다. 예컨대 표준화 활동이 체약·비체약을 망라하여 모든 회원간에 동등한 지위를 필요로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과 같은 협약활동은 명확하게 체약회원국(Members)의 영역이다.

ITU가 별도의 기관으로 표준화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ITU가 다른 포럼과 합동으로 표준개발작업을 해야 만 할까? 이러한 작업분담 가능성은 ITU가 회원과 창조적 잠재성을 잊지 않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ITU는 이러한 회원의 필요와 표준화에 대한 사업지향적 접근방법에 부응해야 한다 - 표준 제정 과정은 시장 주도적이고 정치적 또는 행정적 요소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 재정문제

ITU와 부문(Sectors)에서 다방면의 재정사항

은 물론 교토 결의39호(PP-94)에 의한 활동과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많은 논의의 바탕이 된 영역중의 한 가지는 각 부문의 재정영역이었다.

특별한 항목은;

- 지정된 업무계획에 바탕을 둔 하의상달식(bottom-up)예산편성 접근방법,
- 투명한 회계제도
- 부문회원의 분담금은 해당부문의 예산범위를 넘지 않을 것

그외에 자발적 분담금의 가치도 인정되었고 이를 장려하였다.

## 작업방법과 의사결정

협약을 제정하는 회의는 예외로 하고, 의제항목을 제안하는 회원국과 회원의 동등한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동등한 권리는 또한 연구반(SGs)의 의사결정과정 특히 표준화 부문에서 요구된다.

심사위원회(RevCom)는 부문별로 각자의 작업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 헌장 및 협약

ITU는 모든면에서 민간부문을 참가시켜 근본적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문해야 할 문제는 ITU가 완전한 분해검사를 하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점은 헌장과 협약중의 몇가지 조항이 필요한 변경을 수용하기위해 긴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TU이사회는 1998년 전권위원회에서 결정을 주도해 나갈 모든 기본지침을 승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6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에 개최된 제3회 심사위원회는 특별권고사항과 함께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마무리지었다.

## ITU가 변화를 요하는 이유

전권위원회 결의15(교토, 1994)로 설립한 심사위원회(RevCom)는 임무를 완수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3회 최종 RevCom은 1996년도 이사회에 제출될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5년 5월 제네바의 제1회 회의에서 영국의 Wyn Lucas씨(BT)를 의장으로, 일본 우정성의 Morikazu Takahashi씨를 부의장으로 임명하였다.

Takahashi씨는 그후에 S. Kobayashi씨로 교체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4개의 주요영역을 지정하고 각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자를 임명하였다.

### 가 - 회원권

Peter Watt

(Telecom New Zealand International Ltd.)

### 나 - 재정문제

Lawrence Young(Ameritech)

### 다 - 작업방법 및 의사결정

Robert Brett(Nortel Technology)

### 라 - 현장 및 협약 문제

Abderrazak Berrada(Morocco)

제2회 회의(1995. 12. 11-15, 제네바)에서는 M-회원과 m-회원이 제출한 서면기고서를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었고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형식을 합의했다. 의장

과 4명의 보고자는 위원회의 최종 회의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차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년 1월에 회의를 열었다.

심사위원회 보고서는 ITU와 부문의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자들의 권리와 의무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의 연구 및 논의 결과 ITU기구의 광범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RevCom은 업무수행중에 변화를 요하는 사항이지만 위임사항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없는 영역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은 보고서의 일반적인 결론에만 초점을 맞춘데 반해,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1995-1999 기간동안의 ITU전략계획의 일반적 내용을 지지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ITU 최우선의 이 계획은 연합의 전략정책과 계획에 관한 교토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다.

## 변화하는 전기통신환경이 ITU에 미치는 영향

근년에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신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전기통신서비스와 시스템의 공급이 점진적인 범세계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ITU가입자들은 시장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적 압박도 겪고 있다.

이상의 현상은 ITU의 유일한 입장으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주요 강점을 개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지만, 세계전기통신계의 모든 담당자들이 활동을 지지할 경우에 한하며 그 강점은 다음과 같다.

- 주관청, 제조업자, 통신사업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등에게 세계전기통신 표준을 송

달할 능력이 있음.

- 전기통신 서비스 수요성장에 따른 주파수자원 증가압력으로 인한 전파 스펙트럼 문제(시스템 요건 및 스펙트럼 효율성간의 이점 분석을 포함) 및 위성궤도의 관리/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원조의 증진 및 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이 원조는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들 나라의 경제 성장에 긴요한 현대 전기통신의 유용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임.

## 변화하는 전기통신의 세계

전기통신의 세계는 변모했고 오늘날에는 1990년대 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예를 열거해 보면:

- 여러나라에서 PTT의 기능이 주관청, 규제기관 및 사업자로 분리되었고, 다수의 사업자는 공사(公社)나 상사(商社)로 되었으며 이중에서 다수의 회사는 그 성격이 점차로 다국적화 하고 있다.
- 각종 서비스로 다양한 수준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독점체제가 사라짐과 동시에,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행하고 있는 협상으로 자유화가 강화됨으로서 제조업자 및 사업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새로운 규칙 및 규제제도가 개발되는 한편 새로운 상용전기통신(商用電氣通信)환경에 부응하여 정착되었음.
- 기술개발에 따라 다량의 최신 전기통신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켰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방법을 변화시킴.
- 최신 기술이 전기통신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장의 범 세계화를 가져옴에 따라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독점시장을 생각할 수 없게 됨.

· 최신기술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신규사업자(new entrants)”의 범위도 도입되었으며, 이들 신규사업자들은 기존사업자와 경쟁하여 특정 시장분할 또는 특정 서비스수요를 겨냥하여 신기술을 사용함.

· 지역기구들이 설립되어 규제/경쟁문제, 표준화 및 개발활동, 사업자의 공동 이익집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펴고있음. 포함 수효의 꾸준한 증가가 돋보이며 이들 포함은 ATM, Frame relay, 멀티미디어, 통신망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기술이나 서비스면을 다루고 있음.

이상의 모든 변화는 다소의 정도차는 있어도 재편 및 현대화과정의 지속이 요구되는 ITU에 영향을 끼칠것임.

## 회원은 ITU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전기통신환경이 변화되고 정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조업자의 역할변화에 따라 ITU에 대한 기대도 변화되었다. 예컨대 주관청, 제조업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등 상이한 ITU고객들은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과 같은 협정으로부터 통신망 및 단말기특성 등에 관한 권고사항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다.

다양한 ITU활동 결과물은 회원이 이를 생산물의 고객이며 크게 보아 생산력을 가진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제안서에 의하면 정부간 기구로서의 ITU는 대체로 회원국(M)의 기대에 부응했으나 ITU에 대한 요구변화가 확인된 것은 회원(m)의 관심분야이다.

경쟁적 사업환경하에서 제조업자와 사업자들에게 ITU활동과 관련하여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즉 재정적 인적 자원할당압력 및 신상품에 대한 압력등이다. 회원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조직(기구)에 대한 것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그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회원이 기구에 기대하는 사항은;

- 목적달성을 위한 명확한 대상과 분명한 정책을 견지하며, 타월한 전기통신 기구로서의 역할 유지에 필요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 금전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목적달성이 증명될 것
  - 분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들이 관여하는 분명한 하의상달식 예산 편성 과정하에서 투명한 재무관리제도를 가질 것
  - 시장의 수요에 맞도록 세계표준과 기타 산물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권고를 적기에 제정할 것
  - 신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시에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의 사용을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할 것
  - 비용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달성할 것
  - 개발도상국가의 전기통신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참여
  - 자체의 산물과 서비스의 사용 증진
  - 자체의 업무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첨단 통신방식을 이용할 것
- 이상과 같이 회원들간에 보다 공평한 방법으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 ITU가 직면한 도전

ITU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이 있을것
-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할것
- 간소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조치를 채택하고 필요시에 개정 할 수 있을 것

현장 제2조에 의거 ITU의 회원(M)은 국가(國家)이지만, ITU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연합의 회원국인 실제 정부기구의 회원
- 연합 부문의 활동에 가입의사를 표명한 회원(m)
- ITU의 직원

이들 구성원은 마치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시킬 수 없듯이 ITU가 기대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아무도 지지 않는다.

ITU가 세계전기통신기관으로서 21세기로 진입함에 따라 모든 구성원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필요한 변화의 역할을 하는데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TU활동 참가현황

연합 부문의 작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심사위원회(RevCom)작업 보고는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 현재 ITU활동 참가를 관할하는 현행조건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개괄적인 검토는 소모적인 주장이 아니고 단지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ITU는 현장 제2조에 따라 특성상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없는 권한을 가진 정부간기구로서 대다수의 활동, 특히 사무총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3개 부문의 사업(즉, 전파통신부문(ITU-R),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및 전기통신 개발 부문(ITU-D)}에 참가하는 비정부단체를 참가시키고 있다.

## 참가의 법적·행정적 측면

가입 회원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이

ITU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문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조약은 추가전권위원회(제네바, 1992)에 제출되어 채택되었고 1994년 1월 1일 발효되어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다시 개정되었고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와 별도로 교토회의에서는 결의 제14호로 부문 회원의 권리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국은 ITU 회의(Conferences), 회합 및 협의에 참가할 주권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기타 모든 권한을 향유한다. 현재, 부문의 회원이 아닌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되지않은 관련 부문의 활동에만 참여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 회의에서 부문의 회원으로서 참가 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회원국과는 달리 투표권이 없으며, 이사국이 될 자격도 없고 연합 직원 또는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 입후보자로 출마할수도 없다.

한편 이와는 달리 관련 부문의 회원으로 참가 한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기고서 제출, 토론 참가(당연한 투표권이 되는 동의와 이의제기를 제외함), 회의의제(연합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사항 제외함)에 항목포함 제안 및 연구반, 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RevCom같은것) 등의 의장, 부의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1월 1일부터는 부문의 특정회 원이 참관자로서 전권위원회에 참석할 권리가 허용되었다. 이들은 인정된 운영기관(ROAs), 과학 산업기구(SIOs), 및 이러한 기관과 기구를 대 표하는 국제적 성격의 국책 금융 또는 개발기관 등이다. 전파통신부문의 사업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인정된 운영기관(ROAs)은 당연한 권리로 전파통신회의에 참관자(Observer)로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의 경우 관련 회원국의 대표단원으로 출석을 선호하면서도 이권리를 별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회원국과 ITU의 관계는 “주관청”

즉 현장, 협약 및 행정규칙에서 관할하는 의무이 행에 책임을 지는 정부업무 또는 부서에 의해 유지되며, 대부분의 경우 전기통신주관청이 된다. 회원국은 조약체결권한을 가진 회의에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가진 유일한 구성원으로서 모든형식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토론에 전적으로 참가하며 모든 회의문서와 필요 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받을수 있다. ITU회의 및 회합에서 회원국은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원하는대로 자유로이 대표단을 구성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자동적으로 ITU현장 및 협약에 가입하는 나라는 사무총장이 가입 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연합의 회원국이 된다. 기타 국가는 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국(현재 185개 회원국) 3분의2 다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연합 회원국이 되기전 ITU현장 및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회원은 사무총장이 가입문서를 접수한 달의 첫째날로부터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

체납분담금이 향후 2년동안 납부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회원국은 투표권을 상실한다. 현장 및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니며 1994년 7월 1일(발효일자)까지 가입서류를 기탁하지 않은 회원국도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없다.

결국 ITU현장 및 협약의 체약당사자이지만 1996년 7월 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비준문서를 기탁하지 않은 회원국도 투표권을 상실한다.

부문(Sectors)의 회원들은 현재 다음과 같이 여러 범주로 나누어져있다:

- 인정된 운영기관(ROAs)
- 과학 혹은 산업기관(SIOs)
- 금융 혹은 개발기관(FDIIs)
- 전기통신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
- 지역 및 기타 국제전기통신, 표준화, 금융 혹은 개발기구
- 국제연합(UN)
- 국제연합의 전문기구(IMO, ICAO등)

- 국제원자력기구(IAEA)
- 위성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간기구  
(INTELSAT, Inmarsat)

상기 첫째 항목에서 넷째 항목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은 관련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찬가지로 해당 회원국은 연합 부문의 작업에 그 주체들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단체나 기구는 승인한 회원국을 대신하여 해당 회원국이 관련 국장에게 승인사실을 통보하는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결국 회원국이 전파통신총회, 세계표준화회의 또는 개발회의등 국제조약을 체결하지않는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않은 경우에 관련 회원국의 인정된 운영기관(ROA)이 대체로 주관청을 대신하여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전문기구, IAEA, 위성시스템을 운용하는 정부간기구 및 현장 제43조에 규정된 지역기구등이 조약 체결권한이 있는 모든 ITU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는 부문 회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가 언급되어야 한다. 이들 기구는 초청을 받은 경우 해당회의에서 토론(의사진행문제는 제외)에 참가할 수 있고, 모든 회의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료문서를 제출(회원국과 같이 공식제안은 아니지만)할 수 있으나 국제연합은 예외로하고 회의의제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 가입의 재정적 측면

대다수의 국제연합 전문기구와는 달리, ITU는 1/16에서 40단위의 범위로 분담등급을 자유선택 한 예산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회원국은 40단위이상의 분담단위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기구의 통상예산에 분담금을 납부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규모

의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그러나 1/16등급 및 1/8등급은 이사회의 재량으로 분류하여 저개발국과 기타 회원국을 위해 유보해둔다.

회원(m)의 분담금은 당분간 연합의 통상예산에 배당한다. 회원은 1/2부터 40단위 범위의 분담등급을 자유로이 선택한다. 그러나 개발부문의 회원으로 보다 광범위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부문에 가입을 위해 선택한 분담등급은 1/16, 1/8 또는 1/4의 분담단위로 할 수 있다. 분담단위 금액은 회원국에 대한 '96년도 단위(332,00 스위스프랑)의 1/5 또는 66,400 스위스프랑으로 설정되었다.

가능한 선택범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members)은 분담금으로 1/2이나 1단위를 선택하였다. 이사회에서 면제받은 국제기구(지역기구포함)들 만이 호혜주의에 따라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분담금이 3년간 체납상태인 어떠한 회원이라도 관련 부문의 작업 참여가 중지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의 개최 이전까지 363 개의 각종 단체 및 기구들이 한 개 이상의 ITU 부문의 회원이었다. 1995년도에는 이숫자가 년간 5% 신장하여 383개로 증가하였다. 분담단위로 보아 199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문별 발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ITU-R 7개 단위증가

ITU-T 4.5개 단위 증가

ITU-D 10개 단위증가

RevCom의 결과는 6월의 이사회에 제출되어 부문활동에 보다많은 단체와 기구의 참가가 촉진될 것이며, 이러한 발전이 크게 환영받아 연합이 당면한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즉 가장 활동적이거나 가장 혜택이 적든지 간에 변화하는 전기통신환경과 특히 부문 회원의 필요에 부응케 할 것이다. 